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귀중

2012년 2월 23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의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동 감사인의 2011년 4월 12일자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전기 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주석 9에서 설명하는 수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별첨재무제표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단은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및 주석 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부금수입의 경우 약정에 의거한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주석 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재단은 전기 재무제표에 경상북도 소유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건설중이거나 취득완료된 자산 및 자산취득보조금을 유형자산과 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석 9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자산·부채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구미시 도량 1동 576-4

공인회계사 문 권식 (인)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2년 2월 2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